2016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16. 5

기 획 재 정 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 금 운 용 평 가 단

4. 문화예술진흥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2337호)		
설 치 년 도	1973년	**운용개시년도**	1973년
주 무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금관리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2. 평가결과 요약표

1 개별사업의 적정성

개별사업	평가결과	근 거
		부적정사업 없음.

2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재원조성방법 미흡	본 기금 자체수입의 46%는 복권기금전입금(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금액)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복권기금전입금을 자체수입에서 제외할 경우 자체수입 비중은 37%로 저조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업비 규모를 충당할 수 있는 수입기반이 미흡함. 또한, 본 기금의 수입재원과 지출과의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수입기반 확충 및 사업비 규모의 재검토를 포함한 중기재원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중기가용자산 적정	본 기금의 재원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으로 뉴서울CC의 현실적인 매각방안 수립, 보유사업자산의 국유재산 귀속방안 협의를 권고함.

3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본 기금은 목적의 유효성이 여전히 인정되며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다만, 2013년 기금존치 평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기금보유 골프장 매각의 적극적인 추진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재원 조성방안이 필요함.

3. 존치평가 총평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재원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8852호)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제1항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의 세부적인 용도를 지정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2016년 현재 4개의 단위사업내에 7개의 세부사업, 15개의 세세부사업, 41개의 기초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내용은 예술창작역량강화,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등으로 분류된다.

□ 본 기금의 사업들은 경제성장 및 개인의 소득증가에 따른 문화수요의 자연적인 확대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사업수가 증가하거나 대상이 확대되어 온 경향이 있으나, 최근 들어 기금이 주도적으로 문화수요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적정한 사업의 개발 및 운영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여전히 본 기금의 설치목적의 실효적인 달성을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본 기금은 자체수입기반이 취약하며 중기재원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본 기금의 필수사업비는 과거 5개년동안 연평균 18% 증가하였고 중기수지추계에서도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는데, 향후 사업비의 부족재원을 뉴서울CC 매각,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일반회계전입금 출연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 등 기금의 목적사업과 실제 재원의 연계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본 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업비 규모를 충당할 수 있는 수입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에 수입기반 확충 및 사업비 규모의 재검토를 포함한 중기재원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기금의 재원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으로 뉴서울CC의 현실적인 매각방안 수립, 보유사업자산의 국유재산 귀속방안 협의를 권고하는 바이다.

□ 소득증가와 사회발전으로 문화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사

업을 통한 시장실패의 영역의 보완 기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

□ 본 기금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사회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동 기금이 시행하는 사업수가 자연발생적인 수요확대에 순응하여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공연예술창작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원로연극제, 원로금빛제전사업 등은 관련 공연예술창작지원 기초사업들에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수혜대상의 선정 및 운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전반을 체계화하고 기존의 사업들 중 합목적적인 연계성이 높지 않은 사업은 정리하여 핵심사업 위주로 기금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권고한다. 예술인력개발원 사업은 문화예술 기획이나 경영인력의 수요확대를 반영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자생역량강화를 도모할 것을 권고한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1.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원로연극제, 원로금빛제전 등의 기초사업은 다른 예술창작지원사업내의 기초사업들과 다르게 특정 대상에 대한 특혜적인 성격의 사업이라는 우려가 있어, 기타 공연예술창작육성사업에 통합하여 실효적인 운영을 권고함.

- 동 사업들은 수혜대상을 국한한 것은 다른 공연예술창작육성 지원사업들에 비교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 문화예술기부활성화, 국제예술교류지원, 기타 예술창작지원,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및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 등은 기금의 목적과 합목적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기사업들은 합목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세부사업 내 개별 기초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합목적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정리하여 기금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적정 사업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주체의 적합성

○ 예술창작역량강화,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등의 사업주체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며, 미술관 운영과 예술인력개발원 운영 등도 사업주체로서의 기금의 적합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미술관이나 인력개발원의 운영의 합목적성은 인정되나, 이들 사업의 보유사업자산에 관해서는 국유재산 귀속방안 협의 등을 통한 안정

적인 재원확보의 한 방안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함.

ㅇ 예술창작 및 발표공간지원, 차세대예술인력집중육성,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지역문화예술지원, 공공미술사업운영 등은 민간이나 다른 공공 기관이 그 역할을 대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상기 사업들은 문화수요 중 시장실패가 우려되는 부문에 집중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공적 성격의 기금이 그 시행주체가 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ㅇ 대부분의 개별사업내용이 다른 기금이나 기관의 사업과 중복성이 없이 고유의 사업내용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기금은 문화예술분야의 모든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 유일한 기금으로 예산사업과의 중복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ㅇ 본 기금은 자체수입기반이 취약하며 중기재원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함.

- 본 기금 자체수입의 46%는 복권기금전입금(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금액)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복권기금전입금을 자체수입에서 제외할 경우 자체수입 비중은 37%로 저조하게 분석됨.

- 본 기금의 필수사업비는 과거 5개년동안 연평균 18% 증가하였고 중기수지추계에서도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는데, 향후 사업비의 부족재원을 뉴서울CC 매각,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일반회계전입금 출연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본 기금은 2016년 뉴서울CC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지추

계상 1,400억 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액은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1,000억 원, 자체보유자금 400억 원으로 충당할 예정임.

- 본 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업비 규모를 충당할 수 있는 수입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에 수입기반 확충 및 사업비 규모의 재검토를 포함한 중기재원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함.

-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25%로서 적정하지만 2016년 뉴서울CC 매각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47%로 급증함.

○ 본 기금의 수익자 원인자 손괴자 등 수입재원과 지출과의 연계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기준으로 본 기금의 자체수입 중 복권기금전입금(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금액)과 경정경륜전입금이 54%를 차지하며, 중기수지추계상 일반회계전입금 등 정부내부수입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 등 기금의 목적사업과 실제 재원의 연계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적정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기금은 뉴서울CC(약 2,700억 원), 아르코 예술극장 등 사업자산(약 1,800억 원 규모) 등 총 4,500억 원 규모의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본 기금의 재원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으로 뉴서울CC의 현실적인 매각방안 수립, 보유사업자산의 국유재산 귀속방안 협의를 권고함.

- 뉴서울CC의 매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본 기금의 매각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세를 반영한 매각금액 재산정 등 현실적인 매각방안 수립부터 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기금은 아르코 예술극장 등의 사업자산을 보존가치가 있는 필수보유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기금 부족상황에서 본 기금이 자체적으로 보유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보존가치가 있다면 국유재산으로 귀속(양도)하고 임차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우리나라 문화예술 대부분의 분야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문화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기금의 존치 이유는 여전히 유효하며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 본 기금은 문학,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 전 분야를 지원하고 있어서 향후 기금의 역할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보다 더 안정적인 기금재원확보 방안의 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됨.

- 동 기금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그 필요성이 더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증가나 가구구성변화 등의 사회적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고려한 핵심사업의 지속적인 개편 등 매우 역동적인 기금운영이 요구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문화예술 관련 기금으로 문화 전 분야를 지원하는 기금은 본 기금 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타 기금과의 중복성이나 유사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